

#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26
----------	-------

제출년월일 : 2025. 11. 11.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기관 및 센터의 수강료 등의 면제조항을 추가 하고자 조문 정비

## 2. 주요내용

- 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평생학습시설의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 추가  
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7조(수강료 등의 면제)  
나.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수강료등)  
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3(수강료 등의 면제)

## 3.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다.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라.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붙임 4】

-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10. 1. ~ 2025.10.13. (12일간)

※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단축

- 바. 기타 참고사항

- 1) 현행조례 : 【붙임 5】
- 2)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6.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제2조(「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7.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제3조(「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산시 화정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

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문화체육관광국
입 안 자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평생학습행정팀장 (연락처)	조성진 (031-481-2766)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7조(수강료등의 면제) ①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자</u></p> <p>② (생략)</p>	<p>제17조(수강료등의 면제) ①</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u>청년</u></p> <p>7. ----- <u>사람</u></p> <p>② (현행과 같음)</p>

제2조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사용료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제7조(사용료 등) ②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자</u></p>	<p>7. 「<u>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u>청년</u></p> <p>8. ----- <u>사람</u></p>

제3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의3(수강료 등의 면제) 시장은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생략)</p>	<p>제7조의3(수강료 등의 면제)</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u>청년</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